자 체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1년「문화관광체육국」실국 감사 –

2021. 7.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천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조치					
			시정	주의	권고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징	금액
계		10건	5	5	0	3	10,432	-	-	-	-
1	□□□□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관한 사항	1								
2	□□□□과	□□□□□업체 행정처분 부적정		1							
3	□□□□과	경북 □□ □□□□□ 지원 민간위탁 사업추진 절차 미이행		1							
4	□□□□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정산 검사 소홀	1								
5	□□□□과	한국□□□□경상북도지회 보조사업 원천세 미징수	1			1	2,342				
6	□□□□과	□□□□단체 국내여비 지급 정산 부적정		1							
7	□□□□과	경북□□□□□□ □□□ 등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1			1	6,356				
8	□□□□과	보조금 정산시 보조비율 미준수 관련	1			1	1,734				
9	□□□□과 □□□□과	□□□□단체 보조사업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1							
10	□□□□□과	□□□□□□□ 개발사업 등 추진 부적정		1							

2. 처분요구일람표

1. 위 험 물 안 전 관 리 법 위 반 에 관 한 사 항 (시정) ····· 4

2. □ □ □ □ □ 업 체 행 정 처 분 부 적 정 (주의) ····· 7

3. 경북 □□□□□□제 지원 민간위탁 사업추진 부적정 (주의) ····· 9

4.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정산 검사 소홀 (시정) ····· 12

5 한국□□□□경상북도지회 보조사업 원천세 미징수 (시정) *납부 ····· 15

6 □ □ □ □ 단 체 국 내 여 비 지 급 정 산 부 적 정 (주의) ····· 20

7 경북□□□□□□ 국제전 등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납부 ····· 23

8 보 조 금 정 산 시 보 조 비 율 미 준 수 관 련 (시정) *납부 ····· 36

9 □□□□단체 보조사업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 38

10 □ □ □ □ □ □ □ 개 발 사 업 등 추 진 부 적 정 (주의) ····· 41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관한 사항**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도립예술단의 공연계획을 기획하는 등 예술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하며,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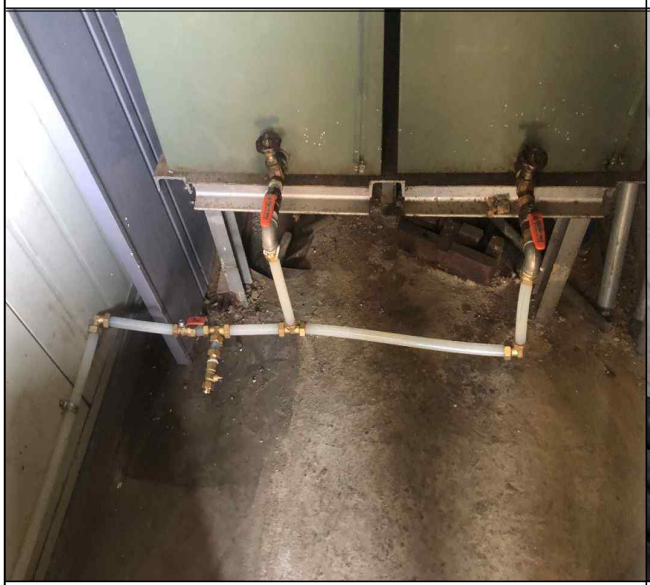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및 제9조에 의거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시·도지사가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아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별표 1에서 위험물 제4류는 인화성 액체로 제2석유류(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의 지정수량은 1,000리터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과 □□□□단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난방유 구매내역을 확인한 바 2019년에는 800리터씩 6회 구매내역이 있었고,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800리터씩 3회 구매, 2020. 11. 28.「보일러 배관 세관 작업 및 순환펌프 교체 등 시행」 공문과 「□□□□단 물품(기름보일러) 구입」 지출품의 공문을 생산

하여 보일러를 교체한 후인 2020. 12. 2. 경유 1,600리터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어 감사기간 중 □□□□단 청사를 방문하여 현장 확인한바 [사진]과 같이 기존 보일러실에 800리터 용량의 유류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인접한 구획실에 미사용 중인 400리터 용량 탱크 2기에 가지배관을 설치하여 탱크 3기(기존 800리터 탱크 1기, 추가 400리터 탱크 2기)를 하나로 연결하여 총 1,600리터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진] □□□□단 보일러실 내 · 외부 사진

<table>
<tr><td></td><td></td></tr>
<tr><td>보일러실 및 탱크보관실 주출입구</td><td>기존 보일러실 및 유류탱크(800리터)</td></tr>
<tr><td></td><td></td></tr>
<tr><td>추가 설치 유류탱크(400리터×2기) 및 가지배관</td><td>기존 유류탱크와 추가 설치한 탱크의 연결배관</td></tr>
</table>

그렇다면,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따라 등유, 경유의 지정수량 1,000리터를 초과하는 수량으로 동법 제6조 및 제9조에 규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 시설을 설치·사용했어야

했어야 함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위험물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업체 행정처분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규정을 위반한 문화재 수리업자와 문화재 수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제49조1항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2」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따르면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년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수한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제22조5항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업체의 위법사항 발생이 확인되면 근거자료 확인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신속히 처분하여야 했다.

그러나 □□□□과에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2019. 8. 9.에 수신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확인에 따른 후속조치 협조요청」공문에 따라 2019. 8. 29. 1차 청문을 실시하여 □□□□□ 업체대표와 면담을 실시한 결과 자격대여 사실을 불인정하여 □□□□과-14529(2019. 10. 10.)호로 안동경찰서에 수사의뢰

요청하였고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후 2020. 6. 9.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부터 자격증 대여자와 대여받은 업체 각 100만 원 벌금의 약식명령 판결문을 수신하였다.

이에 따라 2020. 8. 13. 행정처분 전 2차 청문과정을 통하여 해당 업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2020. 8. 31.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상태를 고려하여 정당 처분인 영업정지 1년에서 6월로 처분을 감경함이 타당하다는 행정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국장의 결재를 득하였다.

한편, 2020. 9. 3. □□□□과에서는 □□□□□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회사 경영의 어려움과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던 공사계약 건을 체결한 후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연기 요청 의견서를 접수한 후 행정처분을 유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2020. 9. 11. 해당 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처분 개시를 2020. 11월로 유예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생산하여 내부결재를 득하였고 2020. 9. 28. □□□□□ 대표 □□□에게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통보를 하면서 처분개시일은 2020. 10. 16.일부터 2021. 4. 15.로 정하여 해당 업체가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행정처분이 개시 될 수 있도록 처분을 지연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경북 □□ □□□□제 지원 민간위탁 사업추진 절차 미이행**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관광분야 청년 취업희망자에게 인턴근무 경험을 제공하여 직무능력 개발 및 경력형성을 통한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협회와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경북 □□ □□□□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관광사업 및 관광 일자리 창출 등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관광분야 인력양성 및 교육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 등에 대하여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수탁 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고,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0조 내지 제21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경북 □□ □□□□제 지원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절차대로 사업을 추진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상기 부서에서는 □□ □□□□제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 의회의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위·수탁 협약체결에 따른 공증 및 사무위탁 사실의 공고 등을 누락한 채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경북 □□ □□□□제 지원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연도	사업명	예산액	사업내용	수탁(보조)기관	비고
2019	경북 □□ □□□□제 지원	500,000	도내 등록 관광사업체의 청년 인턴 채용 임금 지원	□□□□협회	민간위탁금 (307-05)
2020		360,000			
2021		20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경상북도□□□□공사와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경북 관광아카데미, 경상북도 □□□□기금 보조사업 등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3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 집행지침에 따르면 광역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써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사업 종료 후 정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의 예와 같이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그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등을 첨부해야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6장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에 따르면 보조금 실적보고 시 제출서류로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공사대장 관련서류,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검사를 통해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통지하거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상기 부서에서는 2018 경상북도 관광아카데미 사업종료 후 26개월이 지난 2021. 3. 감사일 현재까지 경상북도□□□□공사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2019 □□□□기금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후 10개월이 지난 2020. 10. 경상북도□□□□공사로부터 가정산보고를 받고 2020. 12. 가정산에 따른 집행내역을 그대로 인정하여 가정산 확정통보를 한 후 보조금 실적보고 증빙서류에 대한 검토나 현지조사를 통한 정산검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021. 3.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지연한 사실이 있다.

[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연도	사업명	예산액	사업내용	수탁기관	비고
2018	경북 □□ □□□□	50,000	- 문화해설사 워크숍 - □□□□종사자 교육 - 한옥체험업주 교육 - 우수음식점 업주 및 종사자 교육	경상북도 □□□□공사	
2019	경상북도 □□□□기금 보조사업	3,000,000	-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조치할 사항 □□□□과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미정산 및 정산지연 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협회경상북도지회 보조사업 원천세 미징수**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는 (사)□□□□협회경상북도지회(이하“□□협회”라한다)에 〔표1〕과 같이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 미술인들의 자긍심과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며 도민들에게 다양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표1〕 2018년도 □□□□협회경상북도지회 도비보조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담당부서	보조사업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비		
				계	도비	자부담
계	1개단체	4개사업		231,000	210,000	21,000
□□□□	□□□□협회 경상북도지회	□□□□□□□□□□□□전	4월 ~ 11월	45,000	40,000	5,000
		□□□□□□□□□□전	5월 ~ 12월	33,000	30,000	3,000
		□□□□□ □□ 그리기 및 전시행사	8월 ~ 12월	43,000	40,000	3,000
		찾아가는 □□□	3월 ~ 12월	110,000	100,000	10,000

자료 : 경상북도 □□□□ 자료 재구성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및 제2항에 따르면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4조 제3호에 따르면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도를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의하면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다.[1)]

또한,「지방세법」제103조의13 제1항 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관련세법에 따라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의 정산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납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협회에서는 2018년 □□□□□□□교류전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166,000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필요경비 100분의 70을 공제한 금액의 20%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부과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10%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에서는 □□□□협회에서 □□□ 외 77명의 행사진행 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표2〕와 같이 소득세 2,128,800원, 지방소득세 212,880원 등 총 2,341,680원을 원천징수 하지 않았는데도 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의 행사진행 수당 등 원천징수 미공제에 대해 아무런 시정 조치없이 보조금액을 확정한 사실이 있다.

〔표2〕 □□□□협회경상북도지회 보조사업('18년) 원천징수 미공제 현황

(단위 : 원)

연번	사업명	예금주	이체 일자	지급내용	총 지급액	미공제 원천세			정당한 지급액
						합계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78건			35,480,000	2,341,680	2,128,800	212,880	33,138,320
1	□□□□ □□□전	□□□	6.19	작품설치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2	"	□□□	6.22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3	"	□□□	6.22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4	"	□□□	6.22	행사진행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5	"	□□□	6.22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6	"	□□□	7.4	전시안내	900,000	59,400	54,000	5,400	840,600
7	"	□□□	7.4	작품설치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8	"	□□□	7.4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9	□□□□ □□초대	□□□	9.20	전시안내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1) 필요경비 공제율 : ~ '18년 3월(80%) / '18년 4월~12월(70%) / '19년 1월~ 현재(60%)

	전								
10	“	□□□	9.20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11	“	□□□	11.8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12	“	□□□	5.29	작품설치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13	“	□□□	5.29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14	□□□□ 그리기대회	□□□	8.29	행사진행	1,000,000	66,000	60,000	6,000	934,000
15	“	□□□	9.28	“	1,000,000	66,000	60,000	6,000	934,000
16	“	□□□	10.30	“	1,000,000	66,000	60,000	6,000	934,000
17	“	□□□	11.30	“	1,000,000	66,000	60,000	6,000	934,000
18	“	□□□	10.11	접수진행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19	“	□□□	10.16	“	400,000	26,400	24,000	2,400	373,600
20	“	□□□	11.8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21	“	□□□	11.12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22	“	□□□	11.12	행사진행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23	“	□□□	11.12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24	“	□□□	11.23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25	“	□□□	11.23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26	“	□□□	11.28	“	180,000	11,880	10,800	1,080	168,120
27	“	□□□	12.28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28	“	□□□	12.28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29	“	□□□	12.28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30	찾아가는 □□□	□□□	9.28	전시안내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31	“	□□□	9.28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32	“	□□□	9.28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33	“	□□□	10.11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34	“	□□□	10.31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35	“	□□□	10.31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36	“	□□□	10.31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37	“	□□□	10.31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38	“	□□□	10.31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39	“	□□□	5.3	작품설치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40	“	□□□	5.31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41	“	□□□	5.31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42	“	□□□	5.23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43	“	□□□	5.24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44	“	□□□	5.24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45	“	□□□	5.24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46	“	□□□	5.29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47	찾아가는 □□□	□□□	5.29	작품설치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48	“	□□□	5.29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49	“	□□□	5.29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50	“	□□□	5.29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51	“	□□□	5.29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52	“	□□□	5.31	“	700,000	46,200	42,000	4,200	653,800
53	“	□□□	6.1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54	“	□□□	6.1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55	“	□□□	6.8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56	“	□□□	6.8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57	“	□□□	6.14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58	“	□□□	6.14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59	“	□□□	6.14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60	“	□□□	6.14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61	“	□□□	7.18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62	“	□□□	7.24	“	250,000	16,500	15,000	1,500	233,500
63	“	□□□	7.24	“	250,000	16,500	15,000	1,500	233,500
64	“	□□□	9.20	“	200,000	13,200	12,000	1,200	186,800
65	“	□□□	3.29	행사진행	1,300,000	85,800	78,000	7,800	1,214,200
66	“	□□□	4.30	“	1,300,000	85,800	78,000	7,800	1,214,200
67	“	□□□	5.31	“	1,300,000	85,800	78,000	7,800	1,214,200
68	“	□□□	6.25	“	1,300,000	85,800	78,000	7,800	1,214,200
69	“	□□□	7.31	“	1,300,000	85,800	78,000	7,800	1,214,200
70	“	□□□	8.31	“	1,300,000	85,800	78,000	7,800	1,214,200
71	“	□□□	9.28	“	1,300,000	85,800	78,000	7,800	1,214,200
72	“	□□□	10.30	“	1,300,000	85,800	78,000	7,800	1,214,200
73	“	□□□	11.30	“	1,300,000	85,800	78,000	7,800	1,214,200
74	“	□□□	12.27	“	1,300,000	85,800	78,000	7,800	1,214,200
75	“	□□□	3.29	미술진행	2,000,000	132,000	120,000	12,000	1,868,000
76	“	□□□	4.16	“	1,000,000	66,000	60,000	6,000	934,000
77	“	□□□	7.4	“	1,000,000	66,000	60,000	6,000	934,000
78	“	□□□	10.30	“	1,000,000	66,000	60,000	6,000	934,000

자료 : 경상북도 □□□□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장은

① 행사진행 수당 등 관련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341,68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여 납부 하시기 바라며,(시정)

② 앞으로「소득세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자가 각종 수당의 원천징수 이행 및 보조금 집행 관리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단체 국내여비 지급 정산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

내 용

□□□□는 □□□□단체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표 1】과 같이 2개 단체에(□□□□경상북도연합회, □□□□□□□□□□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표 1】 □□□□단체 운영비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단 체 명	연 도	운 영 비			주요 내용	비고
		계	도비	자부담		
(사)□□□□ 경상북도연합회	소 계	190,000	185,000	5,000	- 직원인건비 - 사무실 유지관리 등	
	2018	50,000	50,000	0		
	2019	65,000	65,000	0		
	2020	75,000	70,000	5,000		
□□□□ □□□□회	소 계	230,000	230,000	0	- 직원인건비 - 사무실 유지관리 등	
	2018	100,000	100,000	0		
	2019	130,000	130,000	0		

「지방재정법」 제3조, 제32조의2 및 제32조의 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공무원여비규정」 제2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에 따르면 “여비는 운임·

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하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고,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水路)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하며,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3. 여비 중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한 사람에게 운임의 경우 철도·고속·비행기·선박의 승차권 등의 자료를 출장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출장자가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출장비 집행시 교통 승차권이나 카드 사용내역 사본, 사진 등 출장을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정산검사시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런데 □□□□에서는【표 2】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출장인원 203명, 28,450,380원의 출장비 집행에 따른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아 출장 여부 확인, 자동차운임의 동승자 지급 유무 등 출장비 지급 적정 여부가 확인이 불가한데도 증빙자료 보완 없이 보조금을 확정한 사실이 있다.

【표 2】 2018~2020 □□□□경상북도연합회, □□□□□□□□□회 출장비 증빙서류 누락 내역

(단위 : 원)

사 업 명	연도	출장여비 지급 내역			출장증빙 여 부	비 고
		지급회수	지급인원	금액		
계		203	203	28,450,380		
□□□□경상북도연합회 운영비지원	2018	17	17	1,599,600	부	
	2019	44	44	3,618,000	부	
	2020	36	36	3,099,600	부	
□□□□□□□□□회 운영비지원	2018	53	53	10,356,180	부	
	2019	53	53	9,777,000	부	

조치할 사항 □□□□장은

앞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시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경북□□□□□□ 국제전 등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상북도 □□□□에서는 사)□□□□협회 경상북도지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표 1]에서와 같이 '경상북도□□□전', '경상북도 □□□전', '경북□□□ □□□ 국제전' 개최에 따른 보조금을 편성 지원하고 있다.

「경상북도 □□□전」은 지역미술인의 창작의욕 고취와 시민정서순화로 향토문화 창달과 역량 있는 신인발굴 육성에 기여하고자 전국 공모로 이루는 지는 사업으로써 □□협회 홈페이지 등 모집 공모를 통해 출품작품을 모집하며, 먼저 출품작을 촬영한 사진을 접수(4일간) 받은 후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실제 출품작을 접수(2일간)하고 예비심사·본심사(2일)를 거쳐 접수장소와 동일한 동락관에서 전시(10일간)를 하고, 전시가 종료된 후 2일에 걸쳐 작품을 반출하고 이후 작품 도록이나 상장 등을 발송하는 것으로 사업이 종료된다.

'경상북도□□□전 개최요강' 공고문 및 보조사업 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술품 출품자는 일정금액의 출품료를 납부하여 대전에 참가하게 되고, 출품분야, 원서교부, 작품규격, 전시작품 내용 및 유의사항, 시상내역, 초대작가 신청, 접수·심사·전시기간 등은 매년 동일하였고, 접수일자, 심사일자, 전시일자는 요일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하였다.

「경상북도 □□□전」의 경우도 지역미술인의 창작의욕 고취와 시민정서 순화로 향토문화 창달과 역량 있는 신인 발굴 육성에 기여하고자 전국 공모로 이루는 지는 사업으로써 우편 등을 통해 □□협회 사무국에서 3일 동안 접수하

여 1, 2차 심사를 거쳐 시상자를 선정하고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10일 동안 전시한 후 전시종료 후에는 2일간 택배(착불)로 반출하는 것으로 사업이 종료된다.

「경북□□□□□□ 국제전」사업은 유럽 미술 애호가들에게 뛰어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작품판로의 다양성을 확보함은 물론 컬렉션의 폭을 넓히고 침체된 경북미술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미술작품을 모집하여 유럽지역 전시관(프랑스 Carrousel du louvre, 벨기에 안트베르펜 러브 2아트 갤러리)[2]에 짧게는 14일, 최장 52일간 전시한 사업이다.

【표 1】 경북□□협회 보조금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연도	예산편성			보조신청일 (교부결정일)	정산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잔액 (이자)	
□□□전	2018	75,000	54,000	21,000	2018.03.15 (2018.03.21.)	75,000	54,000	21,000	12.757	
	2019	87,000	70,000	17,000	2019.02.21 (2019.02.26.)	87,000	70,000	17,000	20,850	
	2020	71,000	63,000	8,000	2020.03.18 (2020.03.26.)	71,000	63,000	8,000	15,012	
□□□전	2018	47,000	27,000	20,000	2018.03.15. (2018.03.21.)	47,000	27,000	20,000	4,330	
	2019	71,000	56,000	15,000	2019.05.15. (2019.05.27.)	71,000	56,000	15,000	4,870	
	2020	56,000	49,000	7,000	2020.03.13. (2020.3.19.)	56,000	49,000	7,000	7,650	
□□□□□□	2018	111,000	100,000	11,000	2018.04.18 (2018.04.23.)	111,000	100,000	11,000	3.121	
	2019	111,000	100,000	11,000	2019.7.12. (2019.7.26.)	111,000	100,000	11,000	0.004	
	2020	89,000	80,000	9,000	2019.6.22. (2020.6.24.)	89,000	80,000	9,000	정산중	

2) □□□□□□ 국제전은 2018년은 벨기에(9.6-9.16)와 프랑스(10.19-10.21)에서 개최되었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벨기에서만 개최(2019.9.21.-10.18. / 2020.10.8.-11.30.)

1. 보조신청 사업계획서 검토 등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2조의2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고,

다만 특정보조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에 의하면 보조금 교부신청시에는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결정 및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1-1.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관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경상북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70,000원, 2시간 이상 계속되는 회의에 대하여는 1인 1회에 한하여 30,000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경북도의 참석기준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표 2]에서와 같이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신청한 보조금 사업계획에 대하여 아무런 보완 없이 보조사업자가 신청한 그대로 인정하여 교부결정 하였고, 이로 인하여 2,630,000원을 절감할 수 없게 되었다.

【표 2】 위원회 참석수당 산출 및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별	연도	사업계획			집행액			道기준 적용시	절 감 가능액
		참석수당 항 목	산출기초	소요액	인원	단가	금액		
계				15,730,000	118		14,430,000		2,630,000
미술 대전	2018	운영위원	6명 × 150,000원	900,000	5	150,000	750,000	500,000	250,000
	2019	운영위원	6명 × 130,000원	780,000	5	120,000	600,000	500,000	100,000
		당연직운영위원	22명 ×130,000원	2,860,000	16	120,000	1,920,000	1,600,000	320,000
	2020	운영위원	5명 × 120,000원	600,000	5	120,000	600,000	500,000	100,000
		당연직운영위원	20명 ×130,000원	2,400,000	20	130,000	2,400,000	200,000	400,000
서예 대전	2018	운영위원	5명 × 150,000원	750,000	4	150,000	600,000	400,000	200,000
	2019	운영위원	5명 × 120,000원	600,000	4	120,000	480,000	400,000	80,000
		당연직운영위원	18명 ×120,000원	2,160,000	17	120,000	2,040,000	1,700,000	340,000
	2020	운영위원	4명 × 120,000원	480,000	4	120,000	480,000	400,000	80,000
		당연직운영위원	15명 ×120,000원	1,800,000	20	120,000	2,400,000	2,000,000	400,000
□□□ □□□	2020	회의참석수당	20명 ×120,000원	2,400,000	18	120,000	2,160,000	1,800,000	360,000

1-2. 사무요원 인건비 관련

□□협회에서 추진한 보조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및 대회 '개최요강' 공고문 등을 보면 [표 3]에서와 같이 □□□전의 경우는 작품전시가 종료되어 작품을 반출하는 기간은 7월말까지로 실질적인 행사가 종료되고 이후 8월부터는 상장과 도록발송・결산을 위해 12월까지 5개월간 사무요원 인건비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였고, □□□□□□의 경우는 벨기에 등에서 개최되는 전시회기간 이후에도 사무요원 인건비가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결정시에는 사업계획상 산출내역에 대하여 사업기간, 집행기준 등을 고려하여 과다하게 산출되거나 사업기간 이외에 지출되는 경비 등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비록 상장과 도록발송 및 결산을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상장·도록의 발송기간이나 업무량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여 조정이 필요하고, 업무특성상 반드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또는 결산에 필요한 기간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여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표 3]에서와 같이 사무요원 인건비에 대하여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에 대하여 검토·보완 없이 그대로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하였고, 그 결과 사업기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추정되는 기간까지 인건비가 지급되었다.

【표 3】 사무요원 인건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연도	작품반출 기간 및 작품수합 (해외전시)	사무요원 인건비 집행내역								비고
			계 획				실제 집행		과다 집행(추정)		
			인원	기간	단가	소요액	기 간	금액	기간	금액	
계						48,700		48,700		14,400	
□□□전	2018	7.16.~17.	1명	10월	1,200	12,000	3~12월	12,000	9~12월	4,800	
	2019	7.15.~16.	1명	10월	1,300	13,000	3~12월	13,000	9~12월	5,200	
	2020	7.13.~14.	1명	5월	1,500	7,500	3~7월	7,500	-	-	
□□□전	2018	7.30.~31.	1명	3월	600	1,800	5~7월	미집행	-	-	
	2019	7.29.~30.	1명	6월	700	4,200	6~10월	6,000	9~10월	1,400	
	2020	7.27.~28.	1명	6월	700	4,200	3~7월	4,200	-	-	
□□ □□□	2020	9~11월	1명	6월	1,000	6,000	8~12월	6,000	9~11월	3,000	

* 공모, 접수, 심사, 전시, 반출을 기준으로 작성(도록발송·결산기간은 제외)

1-3. 구체적 산출내역이 없는 항목에 대한 보조결정

[표 4]에서와 같이 접수요원, 심사종사원, 전시장 안내원, 시상식 도움요원, 작품수합 및 반출요원에 대한 인건비 단가, 작업기간, 소요인원 등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없이 보조금을 신청하였는데도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전 개최요강 공고문에 따르면 작품반출시 “기한 내 미반출시 분실 또는 파손의 책임을 지지 않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반출은 출품자가 직접 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작품반출에 따른 인건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 되는데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한 그대로 인정하여 교부하였다.

【표 4】 세부적인 산출내역서가 없는 지출항목별 내역

사업별	연도별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없는 항목	비 고
□□□전	2019	운영위원·심사위원 교통비, 작품접수요원·심사종사원·전시장 안내원, 시상식 도움요원, 작품수합 및 반출요원	
	2020	운영위원·심사위원 교통비, 작품접수요원·심사종사원·전시장 안내원, 시상식 도움요원, 작품수합 및 반출요원	
□□□전	2019	운영위원·심사위원 교통비, 작품접수요원·심사종사원·전시장 안내원, 시상식 도움요원, 작품수합 및 반출요원, 의전도우미	
	2020	운영위원·심사위원 교통비, 작품접수요원·심사종사원·전시장 안내원, 시상식 도움요원, 작품수합 및 반출요원, 의전도우미	
□□□□□□	2018	전시장 안내요원 인건비, 작품포장 및 반출요원인건비, 액자제작비, 전시관 대관료 및 오픈식(현지진행비)	
	2019	액자제작비, 전시관 대관료 및 오픈식 등 현지 진행비	
	2020	전시장 관리 및 행사 진행요원, 작품포장 및 접수·반출요원, 오픈식 등 현지행사 진행비, 액자제작비	

2. 보조사업 수익금 관리 미흡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당해 자치단체에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고,

위 부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 도와 협의하여 우리 도로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이라고 보조조건을 부여하여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였다.

따라서 출품료는 보조사업에 따른 수익금으로써 수익금 발생시점 등을 고려하여 사용목적과 용도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보조금 정산검사시 수익금 내역과 집행상황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보조사업 목적과 범위 등에 맞도록 집행되었는지 심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금 사용용도나 금액한도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표 6]에서와 같이 □□협회 수입금이 □□□전이 아닌 □□□상생교류 사업 자부담으로 집행되거나 당초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시상금, 작품운송비, 인건비 등으로 추가 지급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수익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6】 보조사업 수익금 및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업별	연도별	보조사업 자부담	출품료		수익금 집행내역
			출품건	금액	
□□□전	2018	21,000	361	18,050	□□□전 자부담 6,850, 시상금 11,000
	2019	17,000	435	21,760	□□□전 자부담 17,835 □□□상생교류 자부담 3,924
	2020	8,000	324	16,220	작품운송비 7,560 시상금 1,000, 인건비 7,014 원천세 등
□□□전	2018	20,000	469	19,610	□□□전 자부담 5,710 시상금 11,900, 초대작가상금 2,000
	2019	15,000	534	23,400	□□□전 자부담 15,000 국제미술교류전 8,400,
	2020	7,000	348	29,441	초대작가 시상 9,297, 철수작업 등 12,226 원천세 818, 미술교류전 및 그리기대회 자부담 7,100

3. 보조금 변경승인 없이 사업집행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및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보조금 교부결정시 변경 승인을 받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였다.

또한 동 조례 제30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협회가 2018년도 □□□전의 자부담에 대하여 급식비(1,200,000원), 제세공과금(300,000원), 출장비(1,000,000원), 시상비(17,000,000원), 식전행사비(1,500,000원)에 사용하는 것으로 교부결정 시 계획하였으나 집행과정에서는 시상비는 11,000,000만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당초 계획에도 없던 행사인건비 4,520,000원, 우편 및 사무용품 등으로 346,620원을 변경승인 없이 집행하였고,

2018년 □□□전의 경우는 당초 계획된 시상비 12,000,000원 보다 1,900,000원을 승인 없이 과다 집행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등 보조금 수행상황 점검 및 정산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보조사업 정산검사 등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25조, 제26조, 제30조의 규정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보조금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을 일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결재를 통해 집행하고 지출결의서를 비롯한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증빙서류 일체를 사업결과 보고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집행의 적정성을 검사하고 적합하지 않거나 정당한 집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류 보완을 요구하거나 보조금 회수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협회가 다음과 같이 대표자 결재를 득하지 않고 지출결의서도 없이 집행하거나 근무내역 등을 확인 없이 인건비를 집행하였고, 집행요건에 맞지 않은 인건비가 집행되는 등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1. 대표자 결재를 득한 지출결의서 없이 보조금 지출

□□협회가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를 보면 2018년도 '경북□□□□□□ 국제전'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표자 결재를 득한 지출결의서를 보조금 정산서류에 증빙하지 않은 채 정산보고를 하였고, [표 2]에서와 같이 □□협회 임직원으로 구성된 위원들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집행하면서 회의장소, 회의일시, 참석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참석자 등록부, 회의록, 사진 등 회의 관련된 증빙자료 없이 '영수증3)' 하나만 첨부한 채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였다.

3) 영수증 기재사항 : 상기 금액을 제00회 ○○○○대전 ◇◇요원 수당으로 정히 영수함. 20××년 ××월 ××일, 근로자 주소, 주민번호, 성명, 계좌번호 등이 기재됨

4-2. 근무일지 등 근무상황 확인 없이 인건비 집행

인건비·수당집행 관련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표 3] 및 [표 7]에서와 같이 46건의 사무요원 인건비 집행과 295건의 반출요원 수당, 심사보조 수당 등을 집행하면서 지출의 증빙을 위한 근무일자, 근무내용, 근무지역, 인건비 단가 등에 대한 근무계약서나 근무일지 등이 없이 인건비 수령자가 서명한 영수증만을 근거로 인건비를 집행하였다.

【표 7】 사업추진 인건비 집행내역

(단위 : 원)

연도별	소계		□□□전		□□□전		□□□□□□		비고
	건	집행액	건	집행액	건	집행액	건	집행액	
계	295	69,037,601	77	12,807,601	149	23,150,000	69	33,080,000	
2018	102	16,487,601	18	3,357,601	70	9,330,000	14	3,800,000	
2019	117	19,150,000	40	5,790,000	51	6,220,000	26	7,140,000	
2020	76	33,400,000	19	3,660,000	28	7,600,000	29	22,140,000	

* 사무요원, 시상식 의전도우미·연주자, 시상식사회자 제외

4-3. □□□□□□ 국제전 인건비 집행 부적정

2018년 해외 전시기간은 벨기에 2018. 9. 6. ~ 9. 16. 및 프랑스 2018. 10. 19. ~ 10. 21.까지이며, □□□과 □□□은 경북□□협회 회원으로써 □□□은 해외작품전시 인솔자였다.

따라서, 전시행사 이전에는 전시안내요원 수당 명목으로 집행할 수 없는데도 [표 8]에서와 같이 □□□(1회 100,000원)과 □□□(2회 500,000원)에게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은 인솔자로써 해외일정상[4] 갤러리 전시안내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전시관 오픈일인 3일차를 비롯해 9일차, 10일차 등 3일에 불과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시 지급계획에 따르면 전시장 안내요원 인건비는 '2명×100,000원×8일'로

4) 일정 : (1일차) 인천→벨기에 안트베르펜, (2일차) Love2 art 갤러리 탐방, (3일차) 전시오픈식, (4일차) 브뤼셀 왕립미술관, 브뤼셀 중앙광장투어, (5일차) 벨기에 국립박물관, 고흐미술관 (6일차) 네덜란드 담광장, 꽃시장, (7일차) 독일 퀄런 시내관광, (8일차) 독일 하이델베르크 관광, (9일차) 벨기에 Love2 art 갤러리, 안트베르펜 미술관 관람, (10일차) Love2 art 갤러리 작품설명회, (11일차) Love2 art 갤러리 작품포장, (12일차) 브뤼셀 공항 출국, (13) 인천

되어 있어서 □□□에게 지급가능한 한도액은 300,000원에 불과하고, 비록 해외 일정 인솔을 하지 않고 전시안내를 위해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없이 1,200,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8】 인건비 집행요인이 없는 집행내역1(□□□□□□ 국제전)

(단위 : 원)

성 명	주소, 생년월일	지급일	지급액	지급사유	비 고
계			1,800,000		
□□□	□□, □□.□□.□□	2018.08.28	100,000	전시안내요원 수당	해외전시 참석
□□□	□□, □□.□□.□□	2018.08.28	200,000	전시안내요원 수당	해외 안내요원 (벨기에)
		2018.08.28	300,000		
		2018.10.30	600,000		
		2018.10.30	600,000		

* 해외전시기간 : (벨기에) '18. 9. 6. ~ 9. 16. / (프랑스) '18. 10. 19. ~ 10. 21.

2020년 시행한 경북□□□□□□ 국제전의 경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국외 출국이 불가한데다 벨기에 안트베르펜의 갤러리 전시기간이 2020. 10. 8.~2020. 11. 30.까지로 지역작가 37명의 미술작품 78점은 2020. 10. 5. 한국에서 벨기에로 반출되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해외전시를 위해 벨기에로 반출된 전시작품 중에서 벨기에서 한국으로 다시 반입된 작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벨기에 현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의 전시준비 및 행사진행요원 수당은 지급사유가 될 수 없고, 오픈식 등 현지행사 진행비는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벨기에로 전시작품이 반출된 이후 국내로 반입된 작품은 존재하지 않고 해외전시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사무요원의 역할은 미미하여 보다 엄격한 집행이 필요하였다.

그런데도 [표 9]와 같이 벨기에 현지 거주자가 아닌 국내거주자 □□ 외 10명에게 전시준비 및 행사진행요원 수당지급은 적정하지 않은데도, 4,556,000원의

수당을 지급하였다.

【표 9】 인건비 집행요인이 없는 집행내역2 (□□□□□□ 국제전)

(단위 : 원)

연도별	지급일	성명	주소,생년월일	지급액	지급사유	비 고
계		10명		4,556,000		
2020	2020.12.21	□□□	□□, □□.□□.□□	500,000	전시준비 및 행사진행요원 수당	
2020	2020.12.24	□□□	□□, □□.□□.□□	330,000	전시준비 및 행사진행요원 수당	
2020	2020.12.24	□□□	□□, □□.□□.□□	500,000	전시준비 및 행사진행요원 수당	
2020	2020.12.24	□□□	□□, □□.□□.□□	500,000	전시준비 및 행사진행요원 수당	
2020	2020.12.29	□□□	□□, □□.□□.□□	600,000	전시준비 및 행사진행요원 수당	
2020	2020.12.31	□□□	□□, □□.□□.□□	220,000	전시준비 및 행사진행요원 수당	
2020	2020.12.31	□□□	□□, □□.□□.□□	200,000	전시준비 및 행사진행요원 수당	
2020	2020.12.31	□□□	□□, □□.□□.□□	376,000	전시준비 및 행사진행요원 수당	
2020	2020.12.31	□□□	□□, □□.□□.□□	1,000,000	전시준비 및 행사진행요원 수당	
2020	2020.12.31	□□□	□□, □□.□□.□□	330,000	전시준비 및 행사진행요원 수당	

5. 보조사업 성과평가 반영 등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4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2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는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사업계획의 효율성, 사업추진실태의 관리, 사업계획대로 집행여부, 예산절감노력, 계획된 성과의 달성여부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지방보조사업에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경북□□□□□□ 국제전’의 경우는 2018년도 사업에 대하여 미실시하였고, □□□전의 경우는 2019년도 사업에 대하여 미실시한 사실이 있다.

더구나 □□협회가 제출한 ‘경북□□□□□□ 국제전’ 보조금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당초 계획되었던 행사일정 등만 기록되어 있을 뿐, 참여 작가・작품수, 판매실적, 관람인원 등 사업성과와 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었고 □□□전과 □□□전의 경우에도 비슷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동 사업은 정확한 성과평가가 이루어 질 수 없는데도 성과평가를 형식적으로 실시한 것에 불과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장은

① 경북도의 승인 없이 지급된 인건비성 경비 6,356,000원에 대하여는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과금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 등 조치하시고,(시정)

② 앞으로는 사업계획에 대한 엄격한 검토를 거쳐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정산검사 시에는 보조금 교부결정내용과 교부조건에 적정한지를 면밀히 확인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보조금 정산시 보조비율 미준수 관련**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

내 용

□□□□는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 등을 위해 [표 1]과 같이 관련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표 1】 사업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연도	보조 사업자	사 업 비			주요 내용	비고
			계	도비	자부담		
□□□ 정책포럼	2019	□□□□□□ □□□회	48,360	32,000	16,360	- □□□ 발전 및 정책 공유를 위한 포럼 개최	
□□□□□□□ □□□□사업	2018	(사)□□□□ □□□□□□ 회	66,000	60,000	6,000	- □□□□ □□□ 학술 출판 - 문화기행 및 포럼 개최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자부담이 포함된 보조사업은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

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해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표 2]와 같이 2개 보조사업을 정산하면서 보조금 집행 대비 미집행된 자부담액 총 2,310천원에 대해 보조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1,734천원의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데도, 시정조치없이 보조금액을 확정한 사실이 있다.

【표 2】 보조비율 미준수 현황(자부담 미집행)

(단위 : 원)

사업명	교부신청(사업계획)			집 행 액			(총 사업비) 집행 비율	(집행율 대비) 보조금 인정액	정당한 보조금 반납액	실제 반납액	**정산액 (환수액)**
	소계	도	자부담	소계	도	자부담					
2018 □□□ □□□□	48,360,000	32,000,000	16,360,000	46,879,000	32,000,000	14,879,000	97%	31,020,017	979,983	-	**979,980**
2019 □□□□ □□□ □□□□	66,000,000	60,000,000	6,000,000	63,287,820	58,287,820	5,000,000	96%	57,534,382	2,465,618	1,712,180	**753,430**

※ 정산액(환수액) 원단위 절사

조치할 사항 □□□□장은

① 부적정하게 정산하여 미 반납된 보조금 1,733,410원에 대하여 회수 조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시고,(시정)

② 앞으로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및 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단체 보조사업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 □□□□과에서는 문화예술분야의 저변 확대와 도민들에게 다양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1〕과 같이 예산을 지원 하였다.

〔표1〕 문화예술분야 도비 보조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사 업 비			보조조건 명시여부
				계	도비	자부담	
계	4개사업	3개단체		489,000	454,000	35,000	
□□□□	전통 □□□ □□□□	경상북도 □□협회	2019.7월~12월	70,000	70,000	0	여
	경북□□ □□□□	□□□□협회 경북도지회	2018.1월~12월	111,000	100,000	11,000	여
	경북□□□전 개최 지원		2018.1월~12월	75,000	54,000	21,000	여
□□□□과	□□□□□ □□□연구사업	□□□□□□	2019.8월~2020.8월	233,000	230,000	3,000	여

자료 : □□□□, □□□□과 자료 재구성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보조사업자인 경상북도□□협회 등 3개단체에서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된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아래〔표2〕와 같이 □□□□□ 등 3개업체와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지 않고 140,400천 원(부가세포함)의 수의계약을 체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 수의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세부계약명	계약업체	지출액	계약방법	체결일자	비 고
계	3개단체	3개사업		140,400			
전통 □□□ □□□□(2019)	경상북도 □□협회	구술채록집 제작	□□□□□	30,000	G2B 미이용 수의계약	2020.2.14.	
경북□□□□□□ 국제전(2018)	□□□□협회 경북도지회	도록제작비	□□□ □□□□□	30,000	"	2018.8.1.	
□□□□□□□□연 구사업(2020)	□□□□ □회	□□□근대 문명사(종합)	□□□□	80,400	"	2020.8.31	

자료 : □□□□, □□□□과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장, □□□□과장**은

앞으로「지방계약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개발사업 등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 활성화를 위해 □□□□협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표 1】과 같이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표 1】 □□□□협회 사업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 조 사업자	연 도	사 업 비			주요 내용	비고
			계	도비	자부담		
계			760,000	760,000	0		
□□□ □□□□개발	□□□□ 협 회	2019	100,000	100,000	0	- □□별 경북 우수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 관광코스 현지답사 등 관광상품 소개 등	
		2020	100,000	100,000	0		
□□□□□□ □□ 운영	〃	2019	200,000	200,000	0	- □□□□□□□□ 운영 및 관리	
□□□□ 안내 홍보물 제작	〃	2018	180,000	180,000	0	- 경북 □□□□ □□ 및 홍보물 제작 등	
	〃	2019	180,000	180,000	0		

1. 연구용역 추진 부적정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동 조례 제7조와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하면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그 결과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정

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안전행정부 예규」 별표 11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려면 용역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 용역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을 관리·감독해야 할 □□□□과에서는 【표 2】와 같이 보조금 교부결정시에 계획되지 않은 2건의 연구용역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집행하도록 하였다.

그러한 결과 연구용역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용역결과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평가받을 수 없게 되었다.

【표 2】 보조금으로 추진한 연구용역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연구용역명	용역기관	기 간	사업비	지출일	비고
계		2건		18,500		
2019 □□□ □□□□개발	경상북도 □□□□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사)□□□□ □□□회	2019.11.25. ~.1.29.	13,000	'20.2.14.	
2019□□□□ □□□□ 운영비	경상북도 □□□□□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 □□□□단	2019.12.3. ~ 12. 27.	5,500	'19.12.30.	

2. □□□□□□ 홍보물 계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의하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용역·물품·기타의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용역·물품 계약에 대해서도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 또는 제조·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 보조금 교부결정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였다.

따라서, □□□□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경북□□□□ 홍보물 제작」보조사업 검토시 2019년의 경우 '□□□□□□ 제작 52,000천 원', 2018년의 경우 '□□□□□□ 80,000천 원', '□□□□가이드북 제작 30,000천 원', '□□리플릿 및 책자 제작 50,000천 원'이라고 계획되어 있어 관련 홍보물 추정금액이 2천만 원 이상임을 알 수 있어 지방계약법을 준수하도록 □□·감독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협회의 홍보물 제작과 관련한 지방계약법 준수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그러한 결과 □□□□협회에서는 【표 3】과 같이 □□□□□□를 제작하면서 '□□□□□' 업체와 2018년은 5회에 걸쳐 66,000천 원, 2019년은 4회에 걸쳐 55,000천 원을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계약하는 등 2인 이상 경쟁입찰을 통한 예산절감 기회를 상실하였다.

【표 3】 경북□□□□□□ 홍보물 계약 현황(2018~2019)

(단위 : 부, 천원)

제 작 홍 보 물	지출일자	지급금액	인쇄부수	제작업체	비 고
계	9회	121,000	400,000		
소 계(2018)	5회	66,000	220,000	□□□ □□	'18년 보조사업 교부 신청시 □□□□□□ 20만부(80백)제작 계획 (실적 22만부 제작) -□□□2018-62호('18.3.6.)
□□□□□□ 제작(봄)	18.4.17	15,000	50,000		
□□□□□□ 제작(여름)	18.6.20.	15,000	50,000		
□□□□□□제작(여름)추가	18.7.31.	6,000	20,000		
□□□□□□ 제작(가을)	18.9.14.	15,000	50,000		
□□□□□□ 제작(사계절)	18.12.6.	15,000	50,000		
소 계(2019)	4회	55,000	180,000	□□□ □□	1회교부('19.4.3.) 12만부(48백)제작 계획 -□□□2019-85호('19.3.18.)
□□□□□□ 제작	19.4.30.	10,000	30,000		
□□□□□□ 제작	19.7.29.	15,000	50,000		2회교부('19.8.6.) 20만부(80백)제작 계획 -□□□2019-186호('19.8.1.)
□□□□□□ 제작	19.11.25.	15,000	50,000		
□□□□□□ 제작	19.12.31.	15,000	50,000		

※ '19 예산 90백만원 ⇒ 추경 180백만원(□□□□□□ 12만부 → 20만부 계획 변경/실적 18만부 제작)

3. 정당한 채주 이외의 예산집행

「지방재정법」제67조 및 제7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지출원은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지급명령을 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Ⅴ장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4.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에 의하면 보조금 사용에 대한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서는【표 4】와 같이 □□□ □□□□ 상품개발 지원사업의 팸투어 지원, 취재경비 지원 등 8건을 지출하면서 팸투어 참여 대표자 또는 취재기자가 신용카드 등을 통해 교통비, 임차비, 식비 등을 집행한 후 그 영수증을 □□□□협회에 제출하면 그 금액 전부를 계좌로 입금하였다.

특히, "□□□□ □□□□"의 경우는 2회에 걸쳐 3,919,000원을 집행하였고, "사단법인 □□□ □□□□회"에 집행된 팸투어 경비 1,875,000원의 경우도 □□□□상품 개발과 구체적인 연계방법이나 목적, 참석인원 등이 마련되지 않은 채 중식비, 차량임차비를 □□□ □□□□회에서 카드결제하면 □□□□협회에서 금액 전부를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언론사를 통한 취재 소요경비 지원의 경우도 □□□□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홍보분야, 홍보내용, 지원경비 규모, 지원대상, 지원요건 등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서 집행해야 함에도 지급항목과 지출액에 대한 기준과 원칙없이 집행하였는데도, 위 부서에서는 보조금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정당한 채주에게 집행되었는지, 보조금 교부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4】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방법 내역(정당한 채주 이외 집행)

(단위 : 원)

지출일자	지출내용	지급액	대 납 자		주요내역	비 고
			소속	성명		
계	8건	8,800,577				
‘19.10.17.	‘19 □□□ □□□□ 상품 개발 지원	2,320,000	□□□□□ □□□	□□□	차량임차비, 식비 등	
‘19.12.10.	〃	1,875,000	□□□□□ □□□	□□□	차량임차비, 중식비 등	
‘20.1.14.	〃	378,100	□□□□□ □□□	□□□	교통비,숙박비, 식비 등	
‘20.6.24.	‘20 □□□□ □□□□□ 상품개발홍보	311,000	□□□□□ □□□	□□□	렌트카주유비, 숙박비, 식비 등	
‘20.7.9.	〃	309,165	□□□□□ □□□	□□□	〃	
‘20.8.31.	〃	488,012	□□□□□ □□□	□□□	〃	
‘20.12.31.	〃	1,520,300	□□□□□ □□□	□□□	렌트카,숙박비, 식비 등	
‘20.12.30.	‘20□□□□□ □□상품개발지원	1,599,000	□□□□□ □□□	□□□	차량임차비, 식비 등	

4.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승인 관련

「지방재정법」 제6조 제1항 및 제5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고 되어 있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나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의 경우는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면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또는 민간이전경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이전경비는 2016년 1월 10일까지만 이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 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예산운용 실무에 의하면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착수한 후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이나 전쟁·사변·동맹·파업·태업 등의 사고로 착수하지 못한 경우, 이월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제32조의4 및「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제2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 □□□□협회에서는 '2019 □□□ □□□□상품 개발지원'의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승인 요청시 【표 5】와 같이 2020 □□□□ □□□ □를 앞두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상품개발 및 홍보를 위해 다각적인 마케팅활동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채 변경 승인요청을 하였고, 특히 기념품 구입비는 구입대상 물품이나 구입 금액은 특정되지 않았으나 구입계획은 보조금 교부결정시 사업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출납폐쇄 기한 이전에 집행을 완료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20년도 예산에 기념품 구입예산이 반영되어 있어 2020년도 예산으로 구입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민간이전경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해서는 안되며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이월하여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였고, 더욱이 출납폐쇄 기한 이후에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해당연도의 보조금 집행사유는 마무리 된 것으로 보아 사업비 이월이 아니라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그런데도, □□□□협회에서는【표 5】와 같이 출납폐쇄기한이 도래하여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5]하여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변경승인 신청을 □□□□과로 요청(2019. 12. 23.) 하였고, □□□□과에서는 동 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 없이 2019. 12. 30. 변경승인을 하였다.

그러한 결과 2019년 집행되어야 할 기념품 구입 예산임에도 "2020년 □□□□ □□□ □ 상품기획 및 행사시 참가자 증정용 기념품 제작·구입비"로 2020. 2. 28. 기념품 구입비 3,488,000원이 집행되었다.

2019년 지출원인행위가 된 '경상북도 □□□□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등 4건, 34,206,230원을 제외한 '경북 □□ □□□□ 개발 관계자 현지답사' 등 2건, 5,759,770원의 집행은 2020년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데도 2019년 예산으로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2020년 □□□□□□□상품개발지원 사업의 경우는【표 6】과 같이 2021년 집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출납폐쇄기한을 8개월 초과하여 승인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5】사업기간 종료직전 기념품 구입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구 분	집행일	금 액	구입 목적	비고
2019 □□□ □□□□상품 개발	'19년 4월 ~'20년 2월	기념품 구입 (플랩탑 오거나이저 135개)	'20. 2.28.	3,488	2020 □□□□ □□□ □ 상품기획 및 행사시 참가자 증정용 기념품 구입	

【표 6】2020년 □□별□□□□상품개발지원 사업기간 연장승인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기 간		변경 승인 사유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2020□□□□□ □□상품개발지원	100	'20.5.1.~ '20.12.31.	'20.5.1.~ '21.8.31.	- 코로나 19 당초 사업계획 변경 등 (□□□□□-8571('20.12.30.)	'20.12.29.요청/ '20.12.30.승인

5. 보조금 변경승인 없이 사업비 집행

5) 2019.12.31. 까지 이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4건을 제외한 이월금액은 5,759,770원임.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및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보조금 교부결정시 변경 승인을 받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였다.

또한, 동 조례 제30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협회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6]의 인건비가 증가(19,421,740원)되었다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했고, 담당부서에서는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토록 □□·감독하여야 했으며, 기 집행된 경비일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검사시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경북도의 승인 없이 【표 7】 과

6) 2019년 □□□□□□□□ 운영비 보조사업비 교부신청(□□□2019-63호, '19.3.4)

같이 사업비를 초과(인건비 19,421,740원 초과)하여 집행 후 정산서를 제출하였고, 특히 보조금 교부결정시 당초 사업계획에도 없고, 도지사가 승인하□□ 않은 특별상여금을 집행했는데도 시정 등 조치 없이 정산을 확정하였다.

【표 7】 인건비 초과 지출 내역

(단위 : 원)

사 업 명	(당초) 계획		(실제) 집행		비 고
계	소 계	95,000,000	소 계	114,421,740	19,421,740 (20% 초과)
2019 □□□□ □□□□ 운영비	인 건 비	88,000,000	인 건 비	108,183,770	
	복리후생비	7,000,000	복리후생비	4,237,970	
			특별상여금	2,000,000	2019.12.31. 지출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는 보조금을 교부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구체적인 내용, 경비의 사용방법, 수행계획, 보조금 등의 금액과 산출기초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등이 적정한 경우에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시고, 당초 보조사업 계획이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